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## [진접선(4호선연장) 차량기지 2공구(차량기지) 건설공사]

- 점검일시 : 2022.01.11 (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정달영, 이상현

○ 건설기계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

- 1-1) 롤러 및 도저의 후방카메라 위치가 사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확인하여 보완 요함.
  - 1-2) 사면 단부에서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굴착기는 전도 등 재해 위험이 있으니 관리자배치, 작업내용 사전 교육 등 안전방안을 마련하여 작업 요함.
  - 1-3) 옹벽자재를 운반하는 통로가 각도가 높으니 굴착기 사용시 위험요인 제거 및 전도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관리 요함.
- 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건설기계-1(건설기계), 건설기계-7(굴착기), 건설기계-13(불도저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도시철도토목부)

- 2-1) 옹벽 설치 작업시 높이가 낮은 경우 생명줄이 역할을 하지 못하니, 추락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요함.

- 2-2) 암판정 작업을 위해 암전면 정리작업중 인 작업자의 추락재해 위험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대책을 마련 교육관리 요함.

- 2-3) 비계해체 작업 후 자재를 암거 상부에 놓아 두었으며, 해체시 상부에서 작업하였고, 하역시에도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으니 추락재해 예방 조치 요함.

- 2-4) 완성된 암거 상부로 올라가지 않도록 통제 및 교육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,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



○ 건설기계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

- 3-1) 비계 해체시 카고크레인의 아웃트리거 일부인출, 아웃트리거 받침 일체형 미사용, 3단 사용 등은 양중작업시 금지 및 지양사항이니 관리 요함.

- 3-2) 카고크레인의 위치가 양중물의 위치와 비교하여 전면작업으로 전도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으니 작업관리 요함.



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건설기계-1(건설기계), 건설기계-3(카고크레인)



○ 전도재해 예방(도시철도토목부)

- 4) 사면 공사용 가도는 다이크쪽에 단부 식별 안전시설이 미설치된 곳이 일부 있으므로 보완하기 바람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(전도 등의 방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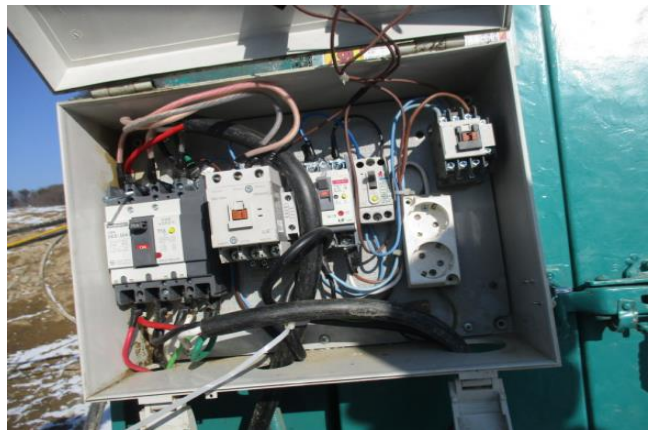


○ 감전재해 예방(도시철도토목부)

- 5-1) 분전함 및 발전기, 믹서기의 외함접지를 접지봉의 각도확인, 동결심도 확인 등을 통해 충분한 접지저항이 확보되도록 보완 요함.

- 5-2) 분전반 충전부 보호 요함.

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감전-2(가설분전함), 감전-6(전기 기계기구의 접지)



○ 사면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

- 6-1) 옹벽부 사면이 경사를 관리하고,
  - 6-2) 전체 현장 사면 중 동결융해의 위험, 적설에 위한 위험 등 위험도별로 분류하여 순차 시행시 중점 관리하도록 할 것.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), 제50조(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)



○ 보건 관리(도시철도토목부)

- 7) 전제 작업장이 산에 있고, 휴식시간 등에 이동할 거리가 멀어 작업장 근처에 근로자가 휴식할수 있는 임시시설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동절기 보건관리에 필요하므로 방안 마련하기 바람.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), 제79조(휴게 시설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도시철도토목부)

- 8) 개천내기 위험물 보관소는 산소와 LPG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가스대차가 보관되어 있는 등 관리가 미흡하므로 조치하기 바람
- 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3.1.6 화재예방-009(위험물보관소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

- 9-1) 비계에서 암거 상부로 방수아스팔트 시공 등을 위해 이동할 통로가 없으니 설치하여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관리 요함.

- 9-2) 개천내기 구간 아웃트리거가 미설치되어 있거나 불안전하게 설치된 사다리가 있으므로 본부 안전관리지침에 맞게 사다리 설치하여 사용하기 바람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3.1.2 가설통로-001(사다리)

